

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
운영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4. 7. 6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5. 12.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4. 5. 20.
- 다. 상정 일자 : 제23회 임시회 제1차
위원회(94. 7. 6.)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토지관리과장 이 영목)

가. 제출이유

-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함(안, 제2조)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, 제3조제1항)
-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,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.(안, 제6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 건재)

-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,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등을 규정함.
-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3. 12. 27. 법률 제4628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,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(김유현 위원장) : 본 조례안은 제정안인데 현재까지는 중개업 분쟁이 있을때 조정해 본일이 있는가?
- 답변(이영목 토지관리과장) :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적극적 조정은 하지않고 진정서가 들어오면 조정차원에서 처리하였습니다.
- 질문(이봉형 위원) : 부동산 매매 분쟁이 상호간 이해대립이 첨예한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?
- 답변(이영목 토지관리과장) : 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하며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코자 합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
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5. 12.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함.(안,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, 제3조제1항)
- 다.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.(안, 제6조)

3. 조례(안) : 별첨

4. 제정근거 : 부동산 중개업법(1993. 12. 27 법률 제4628호)제37조의3

5.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: 위원 수당조치 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
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3의 규

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한다.

제 3 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법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.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공무원(이하 “구소속 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.

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7 조(수당등)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

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7조의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,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, 조정한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.

- 1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
- 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- 3. 시·군·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
- 4.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4. 7. 6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6. 20.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4. 6. 22.

다. 상정 일자 :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4. 7. 6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감사실장 김 진택)

가. 제출이유

·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회위원회에 흡수,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및 행정적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심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기능중 분쟁의 조정·알선 기능 추가(안, 제2조 제3호)
-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(안, 제3조 제4항)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(안, 제4조)
-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폐지(안, 부칙 제2항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건재)

○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